

<의안번호 제2007- 56호>

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7. 11. 6.
- 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7. 11. 8.

2. 제안이유

2007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「거창군 삶의 쉼터」의 효율적인 운영과 종합복지센터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성을 갖춘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시 설 명 : 거창군 삶의 쉼터
- 나. 위 치 :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941-1번지 외 8필지
- 다. 규 모 : 연건평 4,977m²(지상1층, 지상3층)
 - 노인·여성복지회관 : 1동 3,009m²
 - 장애인복지관 : 1동 1,968m²

라. 주요시설

- 노인시설 : 사무실, 홀, 강당, 체력단련실, 생활건강상담실, 건강교실, 소강당, 주간보호센터, 노래연습장, 휴게실 등
- 여성시설 : 여성상담실, 취미교실 , 요리교실, 자원봉사실, 어린이놀이방 등
- 장애시설 : 사무실, 체력단련실, 수치료실, 심리치료실, 언어치료실, 물리치료실, 상담실, 보호작업장, 컴퓨터교실, 자원봉사실 등

마. 위탁대상 업무

- 삶의 쉼터 및 부대시설, 장비, 비품관리
- 노인·여성,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

바. 위탁기간 : 5년 이내

사. 조직 및 직제

- 수탁운영자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,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 편성하여 운영
- 시설운영 초기(개관시) 최소인원 운영
- 향후 프로그램 운영, 이용자 추이 등을 감안 인력 조정 운영

아. 소요예산

- 개관시(10명 기준) 388,372천원(도비 46,000, 군비 342,372)편성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
- 「노인복지법」 시행규칙 제26조
- 「장애인복지법」 시행규칙 제33조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, 제5조
- 「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·운영 조례」 제6조, 제7조

나. 예산조치 : 2008년도 예산에 반영

5. 검토의견

- 금번 제출된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「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·운영 조례」 제6조제1항에서 삶의 쉼터는 군수가 관리·운영하며, 삶의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과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제3항에서는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서,
- 본 건은 노인·여성·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이므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복지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.

6. 참고자료

○ 관련법령 발췌

[사회복지사업법]

제34조(시설의 설치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
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사회복지관,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·퇴소의 기준·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3.7.30>

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노인복지법 시행규칙]

제24조 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)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: 60세이상의 자
2. 경로당 : 65세이상의 자
3. 노인휴양소 : 60세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. 다만,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.

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.

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26조 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)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.
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.

[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]

제33조(시설의 설치·운영기준)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[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]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

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선정위원회) ① 수탁기관을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직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, 수탁기관 심사·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.

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군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